



2021년도 에너지경제연구원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

2021. 12. 20.



목 차

I. 인권경영 추진 개요	1
1. 추진 배경	1
2. 추진 근거	1
3. 에너지경제연구원 인권경영 운영 현황	3
II. 에너지경제연구원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실행	7
1. 인권영향평가의 개념	7
2. 인권영향평가 절차 및 방법	7
3. 평가기준	8
4.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지표 구성	9
III. 에너지경제연구원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11
1.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총평	11
2.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12
3.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분야별 세부내용	14
분야 1. 인권경영 체계의 구축	14
분야 2. 고용상의 비차별	15
분야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16
분야 4. 강제노동의 금지	17
분야 5. 아동노동의 금지	18
분야 6. 산업안전 보장	19
분야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20
분야 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21
분야 9. 환경권 보장	22
분야 10. 소비자인권 보호	23
분야 11. 직장 내 인권 보호	24
IV. 기관운영 주요 개선과제	25

I 인권경영 추진 개요

1. 추진 배경

- 대내·외적으로 기업의 인권 보호와 존중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관의 인권경영 정착과 운영의 중요성 대두
- UN의 국제사회 내 기업의 인권존중 의무 부응 요구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공공기관 경영에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 등 인권경영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 선도 역할 요구

2. 추진 근거

- 국내 인권경영 동향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 인권경영 실행을 위한 인권경영 매뉴얼을 적용하여 인권경영 추진이 필요하며, 국가인권위원회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경영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 인권 리스크를 파악하기 위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수행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구분	요구사항	비고
인권경영 체계구축	1. 인권경영 추진 시스템 구축 2. 인권경영 선언 및 공표 3. 기관 내 각 부서 확산 4. 기관의 영향권 내에 있는 모든 협력사에 확산	기관(기업)의 인권경영 비전과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공표
인권영향 평가	5.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실시 계획 수립 6.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교육 7. 인권경영위원회 평가 자료 제출 8. 인권경영위원회 평가 및 결과보고서 작성 9. 최고경영진 보고 및 공개	기관운영 평가, 주요사업 평가로 구분되며,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분석하여 예방하거나 최소화
인권경영 실행/공개	10. 인권경영 실행 11. 인권경영 전 과정 공개	투명성 제고, 홍보효과, 책임성을 높임
구제절차 제공	12. 구제절차 연구와 준비 13. 구제절차 수립 14. 구제절차 시행 15. 구제절차 시행에 대한 평가와 개선	분쟁을 해결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원상회복시키는 절차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영향평가

-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는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과 같은 국제적 규범의 국내 이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발간’
- 본 체크리스트는 기업들이 인권경영을 도입·실천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일반원칙 및 운영원칙을 제시하고, 기업들이 경영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침해의 문제점들을 기업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자가점검 항목을 제공함으로써 기업들로 하여금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인권경영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강조
- 인권영향평가 수행 시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하는 일반원칙과 운영원칙, 체크리스트 이용방법에 대한 충분한 숙지 필요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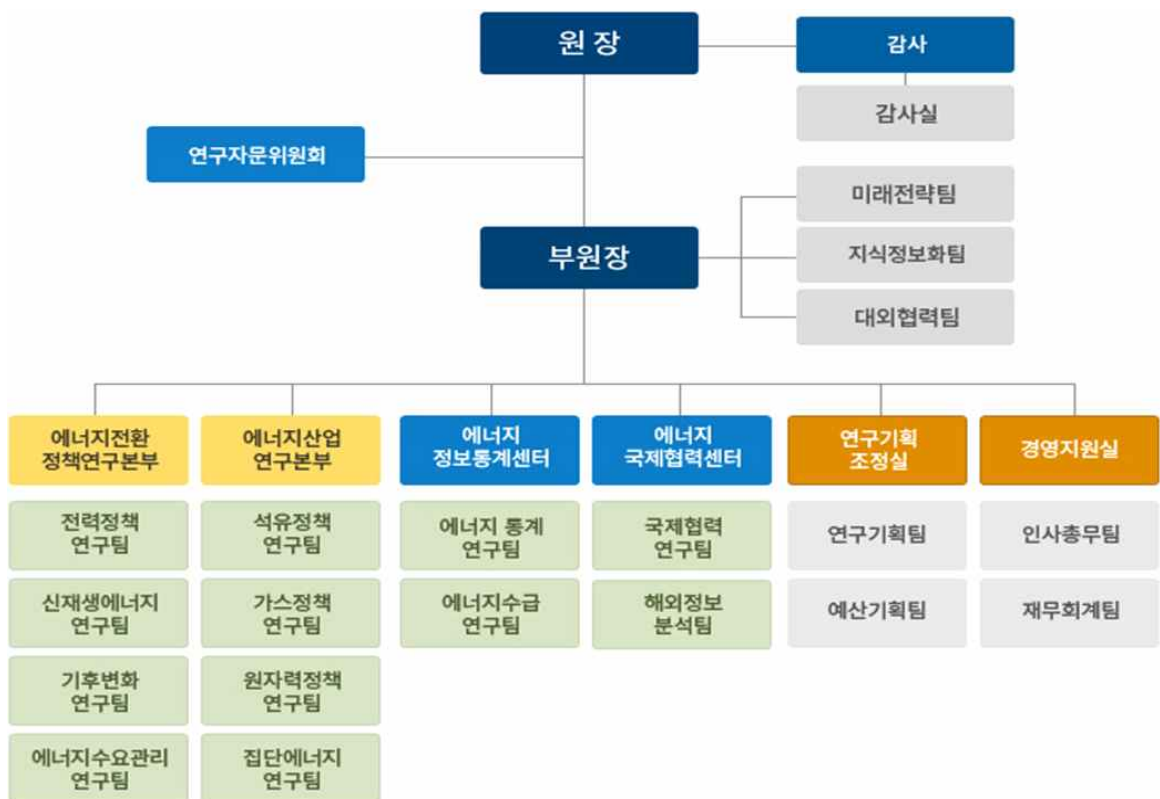
구분	주요 내용
일반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은 자신의 기업 활동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 관계자들의 인권을 보호 존중해야 함 ○기업이 보호·존중해야 하는 인권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된 것뿐 아니라, 국제인권법 및 각종 인권규범에서 열거된 것을 모두 포함
운영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경영 체계의 구축, 고용상의 비차별,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강제노동의 금지, 아동노동의 금지, 산업안전 보장,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환경권 보장, 소비자 인권 보호 등 10개의 각 이슈별 ‘원칙’ 을 제시 ○원칙은 기업이 준수해야 할 이슈별 규범을 압축적으로 나타낸 것
이용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이슈별로 큰 원칙을 읽어서 이해한 후 질문을 읽기 ○질문에 대한 답은 5가지이며, 정확한 진단을 위해 해당 답변에 표시 ○“아니요” 로 나오는 항목을 발견하고 그렇게 발견된 항목에 대해 사전 조치하기 위한 것(취약지점을 발견하는 도구) ○신뢰성을 위해 노조나 여타 이해관계자 또는 외부전문가와 함께 점검

(시사점) 연구원은 국내·외 정책/제도, 법률 등에서 인권경영 체계구축, 실행 노력, 사회적 가치 실현 대응을 요구하는 환경변화에 따라 정례적인 인권영향평가, 실태점검 등을 통하여 인권 현안을 파악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3. 에너지경제연구원 인권경영 운영 현황

□ 기관 소개

- 에너지경제연구원(‘이하 연구원’)은 1986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내외의 에너지 및 자원에 관한 각종 동향과 정보를 신속히 수집·조사·연구하고 이를 보급·교육함으로써 국가의 에너지 및 자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국민경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됨
- 연구원은 ‘기본연구사업’, ‘연구관련사업’, ‘연구지원사업’, ‘수탁연구사업’, ‘정부위탁사업’을 수행
- 연구원의 조직은 2021년 12월 현재 원장 직속 감사 부서와 부원장 직속 미래전략팀, 지식정보화팀, 대외협력팀이 있으며, 에너지전환정책연구본부, 에너지산업연구본부, 에너지정보통계센터, 에너지국제협력센터, 연구기획조정실, 경영지원실로 구성되어 있음



□ 인권경영 조직 및 시스템 구축

▶ 실효성 있는 인권경영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및 인권경영담당자 지정

- (전담부서) 감사실
- (담당자 지정) 인권경영 담당자 지정
- (주요 역할) 인권영향평가 근거자료 작성, 인권개선활동, 성과 환류 등

▶ 인권경영위원회 및 인권침해구제위원회 구성

- (목적) 인권경영위원회 및 인권침해구제위원회 설치를 통한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독립된 의사결정 기구 설치
- (기능) 인권경영 추진에 관한 제도·정책·개선 등에 관한 필요 사항을 권고하고,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심의 등
- (구성) : 7인으로 구성(위원장 1인 포함)
 - 내부위원(3인) : 부원장(위원장), 경영지원담당 부서장, 노동조합 추천 직원
 - 외부위원(4인) : 변호사, 노무사, 이해관계자를 대표 가능한 자, 여성 등

▶ 인권침해 피해자를 위한 구제절차 매뉴얼 제공

- (목적) 임직원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하고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내용을 접수·조사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임직원의 권리를 원상회복시키기 위한 절차 마련
- (구성)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접수→진행→피드백의 구제시스템 구축을 통해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강화에 기여
 - 인권침해 사실을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소통창구 마련

▶ 2021년 에너지경제연구원 인권영향평가 실무협의회 구성

- (구성 인원) 감사실 및 평가대상 지표의 담당자 및 담당부서장 등 17인
- (운영 기간) 2021.10.25.~12.31.
- (주요 역할)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점검 및 자체평가 주관부서인 감사실과 협업을 통한 인권영향평가 실적 자료 관리
- (결과보고서 작성) 감사실 작성 후 외부 전문가 및 인권경영위원회 보고

□ 인권경영 추진 현황

- 연구원은 2018년 12월 연구원 대내·외 의견수렴을 통한 인권경영헌장을 제정하였으며 2019년 12월 ‘인권경영 선포식’을 개최하여 대내·외에 임직원의 인권경영 참여의지를 표명하였음.
- 연구원은 준법경영, 윤리경영, 사회적 책임경영, 지속가능경영 등 관련성이 높은 업무부서인 감사실을 인권경영 전담부서로 구성하였으며, 2018년 12월 인권경영 관련 계획, 평가, 제도와 정책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을 위해 내·외부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하였음.
- 연구원은 2019년 10월 경영활동 전반의 인권 리스크를 파악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의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을 바탕으로 체크리스트를 선정하여 자체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 인권경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 2020년 인권경영 2년 차에는 연구원의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를 제3의 전문기관(한국경영인증원)에 의뢰하여 전문성과 객관성, 투명성을 제고하여 실제적·잠재적 인권 리스크를 파악하였고,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였음.
- 2021년도 인권영향평가는 대내·외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권의 보호와 존중이라는 인권 확산을 위해 인권영향평가 실무협의회를 인권경영 전담부서인 감사실 및 평가대상 지표의 담당자, 담당부서장 등으로 구성하여, 인권경영 부서 간 유기적 협력 역량을 강화하면서 연구원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도출하였음.
- 연구원은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인권침해 구제 매뉴얼을 배포하고 ‘인권침해·갑질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인권침해 행위 발생 시 신속한 상담과 피해자 중심의 구제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인권경영 추진 현황]

분야	상세 내용
인권경영 제도적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경제연구원 인권경영지침, 인권경영헌장 제정('18.12) - 인권현황 기초 실태조사 실시('19.04) - 인권경영 선포식 개최, 인권경영헌장 선언('19.12) - 인권경영헌장 수정('20.12) - 인권경영지침 개정('21.10)
인권경영 추진조직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경영위원회 구성('18.12) - 인권경영 담당부서 '경영지원실 인사총무팀' 지정('18.12) - 이후 준법경영, 윤리경영, 사회적 책임경영, 지속가능경영 등 관련성이 높은 업무부서인 감사실을 전담부서로 지정('20.3) - 인권경영위원회 구성('18.12) - 인권경영위원회 객관성 확보 위하여 내·외부위원 재구성(위원장 1인, 내부 2인, 외부 4인)('21.10)
인권보호 활동 및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직원 대상 인권에 대한 이해와 인권의식 교육 매년 실시 - 사내 내부망을 이용한 성희롱 관련 자료실, 성희롱 및 성폭력 고충상담창구 및 고충상담원 운영
인권영향평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인권영향평가 실시('19.10.) - 2차 인권영향평가 실시('20.11) - 3차 인권영향평가 실시('21.12)
인권침해 구제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국민신문고, 온라인행정심판 홈페이지 - (내부) 인권침해 구제 매뉴얼 마련, 인권침해·갑질피해 신고센터 운영
인권경영 확산 및 성과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자체평가보고서 발간·제출 -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 K-net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개 - 인권경영 보고서 K-net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개

II 에너지경제연구원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실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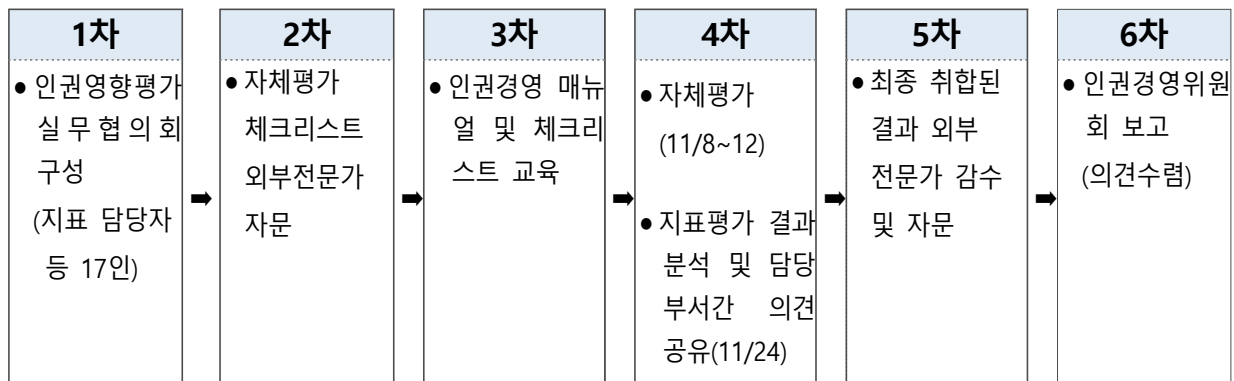
1. 인권영향평가의 개념

-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 인권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평가하는 절차
- 인권영향평가는 조직 스스로 인권경영 현황을 진단하는 도구로서, 인권경영이 잘 이루어지는 지점을 발견하는 것이 아닌, 취약지점을 파악하여 잠재된 인권리스크에 대응토록 하는데 더 큰 의의가 있음.

2. 인권영향평가 절차 및 방법

- 평가분야 : 인권경영 체계, 고용, 노동권, 산업안전, 공급망, 현지주민 등 공공기관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표준안을 기초로 연구원의 경영활동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평가 실시
- 평가주체 및 역할
 - (감사실) 인권영향평가 총괄 담당부서, 인권이슈 및 체크리스트 관리
 - (실무협의회) 평가대상 지표의 담당자 및 담당부서장으로 구성
 - (외부전문가 자문) 자체평가 체크리스트 자문 및 최종 결과 감수
 - (인권경영위원회) 내·외부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인권경영위원회 보고

□ 평가절차



□ 평가방법

- 평가방법은 국가인권위에서 권고한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의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자가점검 형식의 자체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외부전문가 자문 및 인권경영위원회 보고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치는 방법으로 진행
- 인권경영 추진 담당자 및 실무자, 관리자를 대상으로 인권경영 매뉴얼 및 체크리스트 교육을 실시하여 인권영향평가의 중요성과 평가방법에 대해 숙지케 하고, 기관운영 지표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평가지표 확정
- 평가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평가지표의 특성상, 서로 다른 두 집단이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같은 지표에 대하여 지표담당 부서장 회의 개최 후 최종 결과 집계
- 인권경영 전담부서인 ‘감사실’은 지표담당 부서장 회의결과를 인권경영 협력부서(관련부서)에 배포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수정의견 반영
- 최종 취합된 진단 결과 및 증빙자료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 감수 및 자문을 거쳐 인권경영위원회 보고 후 개선과제 도출

3. 평가기준

□ 평가기준 : 지표별 추진실적이 평가기준을 어느 정도 충족하는지 평가

- 점수 및 평가등급 체계

구 분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점 수 (이행 및 준수사항)	2점	1점	0점	0점	평가제외

※ 평가가 불가능한 지표(해당 없음)에 대해서는 평가 제외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평점	100점 ~90점	90점미만 ~80점	80점미만 ~70점	70점미만 ~60점	60점미만 ~50점	50점미만 ~40점

4.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지표 구성

□ 항목 수 및 지표 수 : 11개 분야 35개 항목 168개 지표

○ 2021년도 인권영향평가는 11개 분야 35개 항목 168개 지표 구성

- 국가인권위원회 매뉴얼에서 제시한 10개 분야 + KEEI 자체 개발 1개 분야
(직장 내 인권보호)

; 2019년 7월 16일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등을 고려하여

KEEI 자체 1개 분야 추가 개발(직장 내 인권보호 / 2개 항목 10개 지표)

구분	분 야	항목수/지표수	구분	분 야	항목수/지표수
1	인권경영 체계의 구축	5개/30개	6	산업안전보장	4개/17개
2	고용상의 비차별	4개/17개	7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3개/10개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4개/16개	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2개/10개
4	강제노동의 금지	2개/11개	9	환경권 보장	4개/18개
5	아동노동의 금지	2개/14개	10	소비자인권 보호	3개/15개
11	직장 내 인권보호	2개/10개			

□ 기관운영 평가 지표 : 11개 분야 35개 항목 168개 지표

연번	분야	항목	지표수
1	인권경영 체계의 구축	인권존중 정책 선언	30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인권경영 성과	
		구제절차 마련	
2	고용상의 비차별	고용상 비차별	17
		고용상 남녀 비차별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외국인근로자 비차별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16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노동조합 부재 시 대안적 조치	
4	강제 노동의 금지	강제노동 금지	11
		자회사, 협력기관에 의한 강제노동 예방	
5	아동노동의 금지	연소자 고용 금지	14
		연소자 고용을 알게 된 경우의 조치	
6	산업안전 보장	작업장 안전	17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 실시 등	
		산업재해 피해근로자 지원	
7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협력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10
		모니터링 실시	
		보안담당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예방	
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지역주민 인권의 존중 보호	10
		지역주민의 지적재산권 보호	
9	환경권 보장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	18
		환경정보의 공개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	
		비상계획 수립	
10	소비자인권 보호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	15
		제품결함 시 조치	
		소비자 사생활 보호	
11	직장 내 인권보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10
		직장 내 성희롱 금지	

Ⅲ 에너지경제연구원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1.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총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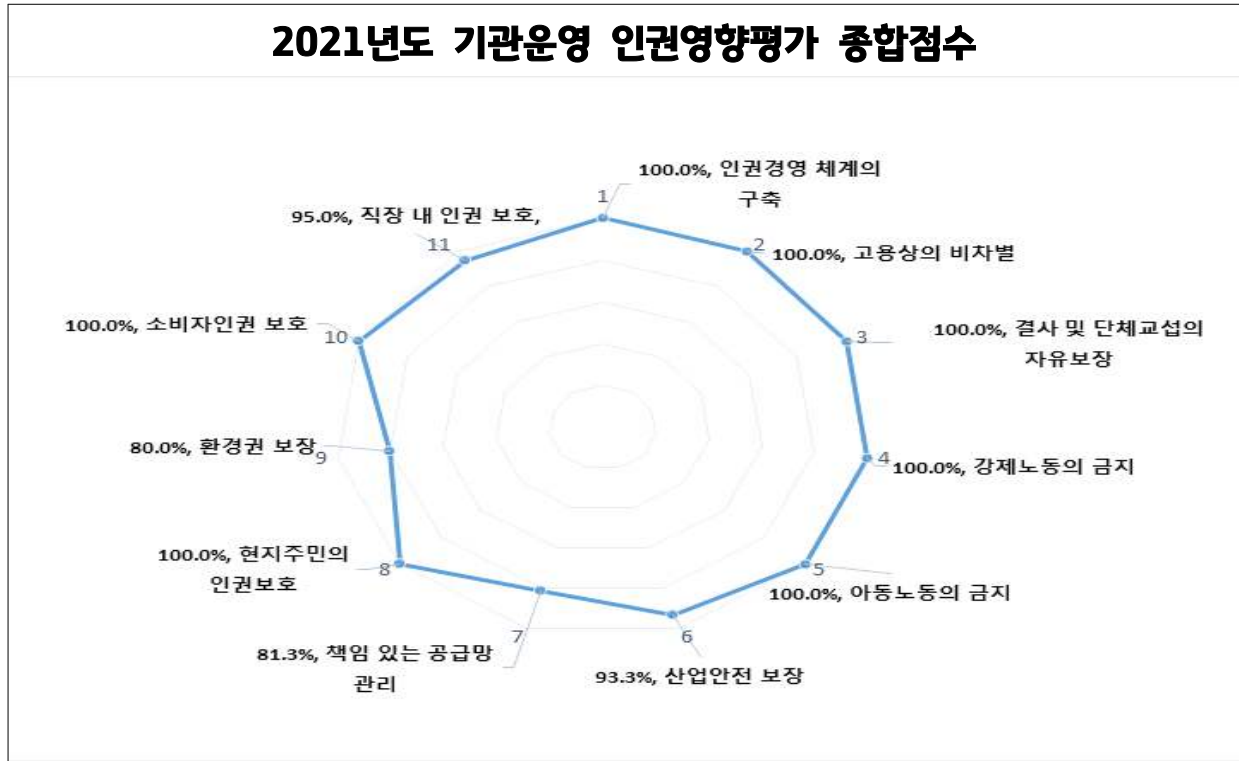
〈 총 평 〉

- ▶ 연구원은 2018년 인권경영헌장 제정 이후, 2019년 인권영향평가를 자체적으로 최초 실시하였으며, 2020년에는 외부 전문가의 현장실사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실사 과정과 평가결과의 객관성과 전문성, 신뢰도를 높이고, 여러 단계의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잠재적·실질적 인권 리스크를 도출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함.
- ▶ 2021년에 실시한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는 96.0%로 전년도에 실시한 외부 전문기관의 권고의견을 촘촘하게 반영한 결과로 11개 분야 35개 항목 168개 지표 중 “예 117개”, “보완필요 8개”, “아니요(미실시) 1개”로 전반적으로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다만, 산업안전 보장,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환경권 보장, 직장 내 인권 보호 분야에서 일부 보완 필요 사항이 확인됨.
- ▶ 연구원은 다양한 인권교육, 갑질 근절 종합계획 및 설문조사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점검절차를 진행하여 적극적인 인권경영 추진 의지와 사회적 기대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함.
- ▶ 보완필요로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인권경영을 선도해 나가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표개선 과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임.
- ▶ 2021년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 홈페이지 공개로 연구원 인권경영활동 공유·확산

2.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 종합 점수 : 96.0점(252점 중 242점)

- ▶ 기관운영 영향평가 결과 96.0%로 1등급으로 우수한 상태
- ▶ 인권경영 체계의 구축, 고용상의 비차별,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강제노동의 금지,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소비자 인권보호 등의 분야는 우수하게 운영
- ▶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환경권 보장 등 분야는 개선 노력 필요



No	분야	2021년도 점수				2020년도 점수		비고
		배점	조정배점	득점	달성율	득점	달성율	
1	인권경영 체계의 구축	60(30)	58(29)	58	100.0%	54	93.1%	
2	고용상의 비차별	34(17)	28(14)	28	100.0%	28	100%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32(16)	28(14)	28	100.0%	28	100%	
4	강제노동의 금지	22(11)	22(11)	22	100.0%	21	95.5%	
5	아동노동의 금지	28(14)	6(3)	6	100.0%	6	100%	
6	산업안전 보장	34(17)	30(15)	28	93.3%	25	89.3%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20(10)	16(8)	13	81.3%	10	62.5%	
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20(10)	6(3)	6	100.0%	6	100%	
9	환경권 보장	36(18)	20(10)	16	80.0%	16	80.0%	
10	소비자인권 보호	30(15)	18(9)	18	100.0%	18	100%	
11	직장 내 인권 보호	20(10)	20(10)	19	95.0%	19	95.0%	
총점		336(168)*	252(126)*	242	96.0%	231/250	92.4%	↑3.6%

※ 점수 산출식 : [(예×2점)+(보완필요×1점)+(아니오×0점)+(정보없음×0점)]÷(해당없음 제외한 전체문항×2점)

※ 11개 분야 *168개 지표 중 *126개 지표 평가(해당없음 제외)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집계결과

- 총 168개 항목 중 예 117개, 보완필요 8개, 아니요(미실시) 1개, 정보없음 0개, 해당없음 42개로 집계됨.
 - (보완필요) 산업안전 보장, 환경권 보장,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등 보완필요 항목은 주요 개선과제에 반영
 - (아니요/미실시) 환경권 보장 분야 중 미실시 항목은 주요 개선과제에 반영
 - (정보없음) 각 지표별 실적을 관리하고 있으며 ‘정보없음’에 해당하는 지표는 0개임
 - (해당없음) 인권경영 체계의 구축, 고용상의 비차별,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아동노동의 금지, 산업안전보장,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환경권 보장, 소비자 인권 보호 중 일부는 점검일 현재 연구원 활동과 직·간접적 해당사항이 없음
- (개선과제) 지표별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실무부서와 협의하여 세부 개선과제를 도출함.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종합 진단결과>

No.	분야	평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계
1	인권경영 체계의 구축(5개 항목)	29	0	0	0	1	30
2	고용상의 비차별(4개 항목)	14	0	0	0	3	17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4개 항목)	14	0	0	0	2	16
4	강제 노동의 금지(2개 항목)	11	0	0	0	0	11
5	아동노동의 금지(2개 항목)	3	0	0	0	11	14
6	산업안전 보장(4개 항목)	13	2	0	0	2	17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3개 항목)	5	3	0	0	2	10
8	현지주민의 인권 보호(2개 항목)	3	0	0	0	7	10
9	환경권 보장(4개 항목)	7	2	1	0	8	18
10	소비자 인권 보호(3개 항목)	9	0	0	0	6	15
11	직장 내 인권 보호(2개 항목)	9	1	0	0	0	10
합 계		117	8	1	0	42	168

3.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분야별 세부내용

◆ 분야 1. 인권경영 체계의 구축

(운영현황)

- 인권경영위원회는 내부 3인, 변호사, 노무사 등 외부 4인 위원으로 구성하여 인권경영의 방향설정, 성과평가 등을 위한 객관성을 확보함.
- 인권영향평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인권경영 실행 및 대내·외 공개 등으로 투명성 제고.
- 인권침해 구제절차 매뉴얼을 마련하고 인권침해·갑질 피해 신고센터 운영.

평가분석 및 요약		
No	항 목	계
1	인권존중정책 선언	100.0
2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100.0
3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100.0
4	인권경영 성과	100.0
5	구제절차 마련	100.0
전 체(달성률, %)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12월에 인권경영헌장을 제정하는 등 인권경영에 매우 적극적이며, 인권영향평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표개선 과정 지속. · 평가지표에서 모두 “예”로 평가되는 등 인권경영 체계의 구축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음. 		

◆ 분야 2. 고용상의 비차별

(운영현황)

- 연구원은 채용규칙과 인권경영헌장에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할 것을 명문화 함.
- 연구원은 채용규칙과 인권경영헌장에 차별 금지 조항을 적시하고 구성원을 개인의 역량에 따라 공정하게 처우하고 있으며 채용 시 채용 대상자에 대한 불필요한 요구를 하지 않고 있음.
또한 교육훈련 시행계획, 승진계획을 통한 교육·배치·승진에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고용 상 비차별 부분이 우수함.

평가분석 및 요약		
No	항 목	계
1	고용상 비차별	100.0
2	고용상 남녀 비차별	100.0
3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100.0
4	외국인근로자 비차별	N/A
전 체(달성률, %)		100.0

· ‘외국인근로자 비차별’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예”로 답변 즉, 공정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 승진 등 관련하여 남녀 차별이 없음.

◆ 분야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운영현황)

- 연구원 내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에너지경제연구원지부 설립되어 활동 중
- 공동단체협약 제7조(균등처우)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있으며 제14조에(조합활동의 보장)와 제15조(부당노동행위 금지)에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

평가분석 및 요약		
No	항 목	계
1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100.0
2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	100.0
3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100.0
4	노동조합 부재 시 대안적 조치	N/A
전 체(달성률, %)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원은 Open Shop제도를 시행 중이고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으며, 조합원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조합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한 사례가 없음. · 연구원 원장이 단체교섭에 직접 참여하는 등 다른 공공기관과 비교해 적극적으로 단체교섭을 보장하는 등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부문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 분야 4. 강제 노동의 금지

(운영현황)

- 연구원은 인권경영현장, 인권경영 지침에 강제노동 금지를 명문화하였고 인권 경영현장 선포식 등을 통해 임직원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음.
- 초과근무 사전신청제도를 운영 중이며 행정 감사 시기에 특정일 초과근로 시 다른 날 휴무를 취할 수 있는 보상 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권경영 현장에 강제노동 금지를 표명하고, 직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근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족친화 문화 조성과 유연근무 제도를 활용하고 있음.

평가분석 및 요약		
No	항 목	계
1	강제노동의 금지	100.0
2	자회사, 협력사에 의한 강제노동 예방	100.0
전 체(달성률, %)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항목에서 근로기준법을 철저히 준수하여,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노동을 강제하지 않음. · 협력사 계약 시 협력사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인권보호 서약서를 징구하는 등 전반적으로 강제노동의 금지 분야 준수가 양호함. 		

◆ 분야 5. 아동노동의 금지

(운영현황)

- 연구원은 일반직 채용 시 학사 이상 소지자를 자격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18세 미만 연소자 고용 사례 없음.
- 연구원은 채용 서류상에 주민등록 등본 등의 신원확인 서류를 받고 있으며,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평가분석 및 요약		
No	항 목	계
1	연소자 고용 금지	100.0
2	연소자 고용을 알게 된 경우의 조치	N/A
전 체(달성률, %)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원은 18세 미만 연소자를 고용한 사례가 없으며, 일반직은 학사 이상 소지자를 자격요건으로 하고 있어 연소자를 고용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평가함. 		

◆ 분야 6. 산업안전 보장

(운영현황)

- 물탱크, 외벽 유리창 청소 등 위험작업 수행은 전문 업체에 위탁하고 있으며, 의무수검대상자 명단을 확인하여 임직원 건강검진을 관리하는 등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실시를 하고 있음.
- 연구원은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하게 될 경우 법령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산업재해피해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단체협약에 명문화하였음.

평가분석 및 요약		
No	항 목	계
1	작업장 안전	100.0
2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75.0
3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 실시 등	100.0
4	산업재해 피해근로자 지원	100.0
전 체(달성률, %)		93.3

- 연구원은 내부 시설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전기, 소방 설비 안전점검을 통해 위생적인 환경이 유지하고 있음.
-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한정된 별도의 안전·위생 대응계획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산업안전 보호조치 강화가 필요함.

◆ 분야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운영현황)

- 연구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력회사를 선정하며 협력회사 및 위탁연구 수행기관에 ‘인권보호서약서’를 징구하고 있음.
- 인권보호서약서에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문구가 언급되어 있음.

평가분석 및 요약		
No	항 목	계
1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87.5
2	모니터링 실시	50.0
3	보안담당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100.0
전 체(달성률, %)		8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보호 서약서 징구 등 협력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에 적극적임. · 인권보호 준수여부 위탁연구 수행기관 중심으로 모니터링 대상기관 확대 시행 필요. 		

◆ 분야 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운영현황)

- 연구윤리규정 제3조(사전예방의무)에 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보고서 작성, 학술대회 참가 및 학술지 게재 등 연구 과정 전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동 규정 제4조(연구자의 의무)에 의거 연구자는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평가분석 및 요약		
No	항 목	계
1	지역주민 인권의 존중·보호	N/A
2	지역주민의 지적재산권 보호	100.0
전 체(달성률, %)		100.0

- 연구원은 지역주민 인권의 존중·보호 관련하여 부정적인 인권영향을 미치지 않아 해당사항 없음.
- 연구원은 저작물의 지식재산권(저작권) 관리지침 제3조 기본원칙 및 연구윤리규정 제3조(사전예방의무), 제4조(연구자의 의무)에 의거하여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하여 확인하고, 이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 사용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고 있음.

◇ 분야 9. 환경권 보장

(운영현황)

- 연구원은 녹색경영세부시행계획(온실가스감축계획 등)을 매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음.
- 환경정보공개 시스템을 통해 환경 관련 정보를 일반 대중과 노동자에 제공하고 있음.
- 연구원은 녹색경영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환경 경영을 위한 예방적 접근을 강구하고 있음.

평가분석 및 요약		
No	항 목	계
1	환경경영체계 수립 및 유지	70.0
2	환경정보의 공개	83.3
3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	100.0
4	비상계획 수립	N/A
전 체(달성률, %)		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원은 온실가스감축계획을 포함하는 녹색경영세부계획을 매년 보고하고 환경정보공개 시스템을 통해 정기적으로 목표와 성과를 보고하고 있음. 		

◆ 분야 10. 소비자인권 보호

(운영현황)

- 연구원은 연구 관련 「기본연구사업 관리 및 운영 규정」 및 「연구사업 수행 및 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실행계획서 평가, 착수·중간·최종 발표회 평가, 출판 심의, 원·내외 평가로 4단계 사전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고객이 확인 가능하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공개하며,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자체진단 결과 및 개인정보보호 지도점검 자체진단결과를 매년 7월에 발행하여 보고하고 있음.

평가분석 및 요약		
No	항 목	계
1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령준수	100.0
2	제품 결함 시 조치	N/A
3	소비자 사생활 보호	100.0
전 체		100.0

- 연구원의 소비자 인권보호 개념은 ‘연구윤리의 준수’로 표현되고 있으며, 특정 기관에 유리한 결과를 위하여 의도적으로 연구 과정과 결과를 왜곡하거나 연구의 결과에 의해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부당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연구결과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관리에 있어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준수하고 있으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음.

◆ 분야 11. 직장 내 인권 보호

(운영현황)

- 직장 내 괴롭힘 고충접수를 위한 ‘인권침해, 갑질피해 신고센터’의 익명 게시판 신고채널을 운영하고 있음.

평가분석 및 요약		
No	항 목	계
1	직장 내 괴롭힘 방지	100.0
2	직장 내 성희롱 금지	90.0
전 체(달성률, %)		95.0

- 연구원은 홈페이지 상 인권침해 신고채널을 운영하고 매년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원내·외 갑질 인식 실태조사’를 통한 직장 내 괴롭힘 발생여부를 모니터링 하기 위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직장 내 성희롱 모니터링을 위한 심층조사 실시 필요.

IV

기관운영 주요 개선과제

분야	항목	세부 내용	개선과제(안)
산업안전 보장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임산부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산업안전 보호조치 강화 필요	(인사총무팀) 취약계층 산업 안전 보호조치 - 중·장기과제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모니터링 실시	인권보호 준수여부 위탁연구 수행기관 중심으로 모니터링 대상기관 확대 필요	(인사총무팀/ 재무회계팀) 협력회사 인권보호 준수여부 모니터링 확대 - 중·단기과제
직장 내 인권보호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직장 내 성희롱 모니터링을 위한 심층조사 실시 필요	(인사총무팀) 직장 내 성희롱 모니터링을 위한 심층조사 실시 - 단기과제